

## 중요성 결정기준에 대한 고찰\*

김 성 기\*\*

.....

특정회계정보의 누락(omission)이나 왜곡표시(misstatement)로 합리적 인간이 회계정보에 의거하여 내린 판단이 변화되거나 영향받으면 그 회계정보는 중요하다. 누락되거나 왜곡표시된 항목의 성격이나 금액의 크기에 따라 중요성이 결정되므로 중요성은 특정항목에 대한 인식과 보고의 구분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성은 회계정보를 공시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screen)이나 분기점(threshold)의 역할을 한다. 중요성에 대한 분기점은 특정항목이 특정수준 아래에 있으면 중요하지 않고 특정수준 위에 있으면 중요하다고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성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은 중요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규정이 체계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미진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및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대두되는 다양한 산업 및 다양한 환경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중요성 규정의 미진한 점을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중요성 규정은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논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일관성있는 중요성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중요성 기준의 설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중요성 결정 기준이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중요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 중요성은 정확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기대보다는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하는 정확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특정항목이나 오류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크기, 특성과 그것이 발생하거나 나타나게된 환경 등에 의존한다.
- 특정 항목이 계정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비교 수치 및 추세, 미래의 예상 그리고 경쟁자의 계정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중요성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효익이 감소한다.

---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은 계량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평가하여서는 않된다.
-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항목의 중요성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

## I. 서 론

회계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은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특정회계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기재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한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하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기업회계기준」을 이탈하여 회계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왜곡표시시켜서는 안 된다.

중요성과 관련하여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Regulation S-X의 Rule 3-02에 의하면 특정항목에 대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공시할 필요가 없다. 한편, Rule 1-02에 의하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분별있는 평균 투자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BarChris 판결(1968)에 의하면 특정정보가 올바르게 표시되거나 공시되었더라면 분별있는 평균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하다. 미국고등법원판례(1971)에 의하면 합리적인 투자가가 특정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면 주식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의 내용이 변하는 경우 그 정보는 중요하다. 이 두 판례는 정보이용자를 분별있는 투자자로 지칭하였으나 판례의 내용은 투자가 이외의 정보이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미국의 대법원판례(1976)에서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있다.

합리적인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데에 특정사항의 누락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 그러한 누락은 중요하다. 즉, 합리적인 투자가가 누락이 공시되었더라면 이용가능한 정보의 총 배합(total mix)이 중대하게 변경되었으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면 당해누락은 중요하다.

재무제표 이용자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근거하여 중요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의 “합리적 인간”이나 “분별력 있는 평균적인 투자자” 등과 같은 관점에서 재무제표 이용자를 정의하고 특정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면 그러한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재무제표 이용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중요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동기가 아니므로 중요성에 대한 본질적 문제는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오도된 추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없을 경우 재무제표가 오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중요성을 정의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특정항목의 중요성은 금액의 크기와 항목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즉, 중요성은 질적인 측면과 계량적인 측면을 갖는다. 그리고 특정 사건(event)이나 거래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격으로 인해 중요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류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은 주류 제조회사에게는 심각한 사건이다. 가격조작을 금지하는 법안, 반독점법안 등은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성을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예이다. 신규 사업부문에 관한 보고는 그 사업부문 영업성과의 금액과 관계없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보의 금액과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재고자산을 주요항목별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회계정보의 누락(omission)이나 왜곡표시(misstatement)로 합리적 인간이 회계정보에 의거하여 내린 판단이 변화되거나 영향받으면 그 회계정보는 중요하다. 누락되거나 왜곡표시된 항목의 성격이나 금액의 크기에 따라 중요성이 결정되므로 중요성은 특정항목에 대한 인식과 보고의 구분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성은 회계정보를 공시하는데 있어서 심사기준(screen)이나 분기점(threshold)의 역할을 한다.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 중의 일부는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성을 결정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계량적 기준만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비계량적 기준을 선호하며, 어떤 사람은 계량적 기준과 비계량적 기준의 혼합을 선호한다. 계량적 기준만의 사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항목에 대한 회계에서는 보다 큰 균등성을 촉진시킬 상대적 또는 절대적 지침을 일반적

으로 추구한다. 비계량적 지침의 옹호자들은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건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계량적 고려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요성은 특정항목에 관련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중요성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회계기준제정기관이 중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제정할 때까지는 개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여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때때로 필요하며 미래에 제정되는 회계기준서에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무회계의 기본 목적은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즉, 회계정보는 이해가능성,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효율성 등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 필요한 질적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회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감가상각방법, 자산평가방법, 공시방법 등과 같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정책(accounting policy)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중에서 특정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기준을 제공해 주며, 재무제표 구성요소들에 대한 식별·측정·보고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의미를 가지려면 중요성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수많은 정보를 모두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는 없다. 정보이용자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판단 이전의 문제로서 인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정보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중요성 기준이 존재가치를 갖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원가를 기준으로 한 회계정보의 경우, 목적적합성은 높아지지만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또한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이해가능성은 증대되지만 목적적합성은 감소한다. 이 경우 어떤 질적 특성이 정보이용자에게 더 중요성을 갖는가는 정보의 생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발생주의 회계의 틀 속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

는데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이 허용되는 경우 각 회계정책의 중요성 차이에 의해 회계정책의 선택이 결정된다. 이와 같이 회계의 전 과정에 걸쳐 중요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은 중요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규정이 체계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미진하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저하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및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대두되는 다양한 산업 및 다양한 환경에 봉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중요성 규정의 미진한 점을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 법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명확한 중요성 규정은 감사인과 피감사인 사이에 논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일관성있는 중요성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인 중요성 기준의 설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체계 속에서 중요성 결정 기준이 제정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 II. 중요성의 개념과 분기점

### 1. 중요성과 공시

중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중요한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중요성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정보 및 공시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주요 책임인 감사인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개념이다. 중요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Roberts와 Dwyer(1998)는 중요성을 재무제표에서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즉,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가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감사인은 중요한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도록 감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특정항목의 공시여부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 해당항목이 중요하다고 분류되므로 Thompson과 Fowler(1993)는 중요성을 공시문제로 해석한

다. 그러므로 공시문제와 관련된 지침만이 중요성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공시문제는 부가정보 혹은 대체정보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고려한다(예: 단순주당순이익 대신에 기본주당순이익 혹은 완전회석주당순이익의 공시). 공시와 관련되지 않는 지침은 중요성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하며 중요성 지침과 혼동되어 어떤 사건의 공시여부를 결정짓는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계개념을 정의하거나 어느 경우에 특정회계정책을 적용하느냐를 결정하는데에 이용된다. 이러한 지침은 보통 어느 경우에 특정회계정책이 다른 회계정책을 대신하여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한다(예: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으로 지분법과 원가법 중 선택문제).

「미국감사기준」 제 27 호(1984)에서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에 대한 개별 왜곡표시(누락이나 비공시를 포함)나 왜곡표시 총계로 인하여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고 평가할 때 정보이용자의 판단이 주변상황에 비추어 이러한 왜곡표시에 의해 영향을 가능성이 있을 때로 중요성을 정의한다. 이 정의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과 감사인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내포한다.

감사인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감사가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느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감사인은 감사 계획단계에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오류의 금액에 대해 예비적으로 추정치를 도출한다. 예비 추정치는 수집될 증거의 양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초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감사 계획 단계에 있어 중요하다. 중요성은 감사의 최종 평가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사인은 감사중에 발견된 오류 금액을 기록하고 합산하여 총 오류의 영향이 합리적인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바꿀 만큼 중대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인은 감사 절차의 특성, 시기 및 범위 등을 계획할 때, 감사 절차를 수행할 때, 왜곡표시가 계정분류 및 계정평가액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그리고 재무제표에의 표시 및 공시의 적정성을 결정할 때에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와 감사보고서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감사인의 업무는 감사 과정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중요성판단과 연관되어 있다. 감사인은 전문적 판단에 의거하여 오류나 왜곡표시의 중요성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중요성의 판단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인 논쟁점이다. 발견된 오류의 중요성 여부에 의거하여 이러한 의사결정을 한다. 감사인이 발견된 오류가 중요하지 않아 이용자의 의사결정의 내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면 감사인은 수정되지 않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

정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금액에 관해서 감사인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일부 감사인은 중요성 지침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만 일부 감사인은 중요성을 고도로 추상적이고 복잡한 판단 과정으로 특징지우는 것을 비난한다. 예를 들면, Elliot(1981)은 중요성 판단 과정을 기계적 또는 자동적 규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기계적 접근법이 존재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적어도 재무제표가 전달하고자하는 정확성의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의 질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특성과 중요성에 대한 분기점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주관성으로 인하여 중요성 금액을 높이 책정하는 것은 감사의 질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 2. 중요성 결정기준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에 적용되는 모든 고려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중요성기준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FASB의 견해이므로 FASB는 중요성평가에 사용될 구체적인 기준(지침)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공인회계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이하 AICPA)의 감사기준위원회도 SAS 제47호에서 감사인이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SAS 제47호에 규정된 가장 구체적인 기준(지침)은 중요성에 대한 고려사항이 감사인의 감사대상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감사대상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참조할 기준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중요성 분야가 회계담당자들과 감사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중요성 판단에 관한 과거 연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은 점에서 입증되고 있다.

중요성 분야에 있어서 현행기준의 개정과 추가 공시가 계속 요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제정기관은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중요성에 대한 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의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것이 감사의 질에 대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이용된다는 견해는 감사인이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속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 감사인이 자신의 업무를

속이고 전문적 온정주의를 취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뿐만 아니라 중요성 기준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감사업무를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한 대가로 공공의 신뢰를 우선한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과 같다.

FASB 토론회(1975)와 관련하여 회계전문가가 중요성에 대한 기준과 실무관행을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Mautz와 Sharaf(1961)에 의하면 감사가 전문가의 판단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이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개념적 견해가 불일치하다. 기능주의자에 의하면 전문적 판단을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한 판단과 위험평가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요성에 관한 현행 실무와 공시가 온정주의적이라고 Roberts와 Dwyer(1998)는 주장한다. 즉, 감사인은 정보이용자를 대신하여 중요성을 결정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내려간다. 감사인의 중요성 선택에 있어서 불가피한 온정주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완화될 수도 있다.

- ① 공공의 검사(public scrutiny)를 위해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 고려사항을 공시한다.
- ② 특정 감사와 관련된 중요성 수준을 정보이용자가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중요성기준을 제정한다.

### 3. 왜곡표시의 의미

「미국감사기준」 SAS 제47호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포함된 개별 또는 전체 왜곡표시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절히 공시되지 않게 할 정도로 중요하다면 그 재무제표는 중요하게 왜곡표시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왜곡표시는 오류 또는 부정에 기인할 수 있는데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 왜곡표시는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따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곡표시는 다음 중 어느 항목으로도 구성될 수 있다.

- ① 실제로 보고된 재무제표 구성요소, 계정 또는 항목의 금액, 분류 또는 표시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보고되었을 금액, 분류 또는 표시간의 차이



- ② 재무제표 구성요소, 계정 또는 항목의 누락
- ③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공시항목
- ④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공시되도록 규정된 정보의 누락

감사인이 분석적 절차를 통하여 계정과목의 잔액, 거래유형 및 경영자의 주장을 검증할 때, 대부분의 경우 감사인은 왜곡표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는 없고, 단지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에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징후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분석적 절차를 수행한 결과 왜곡표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왜곡표시의 개략적인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에서의 발생가능한 왜곡표시를 추정할 수 있도록 다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SAS 제47의 해석에 따르면 왜곡표시는 확인된 왜곡표시와 발생가능한 왜곡표시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확인된 왜곡표시(known misstatement)는 구체적으로 식별된 왜곡표시의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수취한 재화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미지급비용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이다. 발생가능한 왜곡표시(likely misstatement)는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에서의 왜곡표시 총계에 대한 감사인의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를 의미하여 감사인이 분석적 절차나 표본조사를 수행할 때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사인이 특정 거래유형에 표본조사를 적용하여 표본추출된 항목의 알려진 왜곡표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표본에서 확인된 왜곡표시를 이용하여 전체 모집단에 대해 추정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왜곡표시를 결정할 것이다.

발생가능한 왜곡표시는 회계추정치와도 관련되어 있다. 「미국감사기준」 SAS 제47호에 의하면 미래사건을 추정하는 경우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은 계정과목이나 거래유형이 실제 자료를 포함하는 경우보다 회계추정치를 포함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크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 진부화, 회수불능 채권 및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추정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자료의 사용이나 적절한 자료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왜곡표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회계추정치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증거에 의거한 최선의 추정액과 재무제표에 포함된 추정액과의 차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는 발생가능한 왜곡표시로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추정액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감사인은 보도된 추정치와 적정 추정치와의 차이를 발생가능한 왜곡표시로 보아

야 하며 다른 발생가능한 왜곡표시사항과의 합계를 구하여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확인된 왜곡표시에 대한 계량적 평가는 전문가적인 판단의 문제이다. 감사인은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의거한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중요성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확인된 왜곡표시의 계량적 영향을 평가한다. 예를 들면, 계속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세후이익은 대부분의 경우에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치이다. 확인된 왜곡표시의 중요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유용할 그 밖의 재무제표 요소로는 유동자산, 운전자본, 총자산, 총수익, 매출총이익, 총자본 및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등이 있다. 감사인은 이 중에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중요하게 여길 만한 요소를 선택하여 확인된 왜곡표시의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 4. 왜곡표시의 질적 특성의 고려

중요성 판단에서 계량적요소에 대한 고려와 질적요소에 대한 고려가 상호작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의 왜곡표시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합법적이면 중요하지 않을 금액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불로 인하여 중요한 우발부채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금액의 수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금액은 중요해질 수 있다.

SAS 제47호의 해석에서는 왜곡표시의 중요성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질적 요인으로 다음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 ① 왜곡표시가 추세(특히 수익성의 추세)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 ② 손실을 이익으로(또는 이익을 손실로) 변화시키는 왜곡표시
- ③ 왜곡표시의 부문별 정보에 대한 영향. 예를 들면, 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에 대한 문제의 중대성, 부문별 정보에 대한 문제의 광범위한 파급(pervasiveness)이 부문별 정보 추세에 미치는 영향
- ④ 왜곡표시가 기업의 차입계약 및 기타협약과 법적규정에의 충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 ⑤ 중요성의 분기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보고조건의 존재

- ⑥ 상여금이나 성과급 조건을 충족하여 경영자의 보상을 증가시키는 왜곡표시
- ⑦ 왜곡표시를 둘러싼 환경의 민감성. 예를 들면, 부정과 불법행위, 계약조건의 위반, 이해관계의 충돌 등에 왜곡표시가 미치는 영향.
- ⑧ 왜곡표시에 의해 영향받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중대성. 예를 들면, 반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로서 특별항목과 같이 비반복적 채무(charge)나 채권(credit)을 수반하는 왜곡표시와는 대조되는 것.
- ⑨ 잘못된 계정분류의 영향. 예를 들면,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의 이익간 또는 반복적과 비반복적인 이익 항목간의 잘못된 계정분류나 비영리조직에서의 자금조달 비용과 프로그램 활동비용간의 잘못된 계정분류.
- ⑩ 이용자의 요구와 관련된 왜곡표시나 공시의 중대성. 다음과 같은 영향이 여기에 포함된다.
- 상장법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의 중대성과 비상장법인 채권자의 관점에서 자기자본 금액의 중대성
  - 왜곡표시가 지분 이전(예: 판매-구매 협약)에서 취득가격 계산에 미치는 영향
  - 이익예상액과 차이나는 경우 이익의 왜곡표시로 인한 영향
- ⑪ 왜곡표시의 명확한 성격. 예를 들면, 추정, 배분, 불확실성에서와 같이 주관성이 어느 정도 불피하게 개입되는 왜곡표시와 대조되어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정확성
- ⑫ 왜곡표시에 대한 경영자의 동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 회계추정치를 예측하는 경우 경영자에 의해 발생가능한 편의(bias) 패턴의 징후
  - 재무보고 과정의 약점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자의 지속적인 의도로 인해 촉진되는 왜곡 표시
- ⑬ 개별적으로는 중대하지만 성격이 다른 왜곡표시의 영향이 상쇄되는 경우
- ⑭ 왜곡표시가 현재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 기간에 걸친 누적효과로 인해 미래 기간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 ⑮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의 영향을 기록하기 위한 근거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 효익을 초과할 수도 있다. 반면에 경영자가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금액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처럼

보일 경우, ⑫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영자의 동기유인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 ⑩ 추가로 존재할 수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5. 중요성의 분기점

중요성에 대한 분기점(threshold)은 특정항목이 특정수준 아래에 있으면 중요하지 않고 특정수준 위에 있으면 중요하다고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성 수준이다. Iskandar와 Iselin(1996)은 중요성에 대한 분기점은 재무정보가 잘못 기재되더라도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재무제표 작성자나 감사인이 믿을 수 있는 최대금액을 말하므로 등급척도(예; Likert Scale)를 사용하여 중요성 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분리된 공시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공시의 구분만 고려하지만 재무정보에 대한 구분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 ① 재무제표에 별도로 분리하여 공시하지 않고 계정에 분개하는 것과 분개하지 않는 것의 구분: 이 상황은 특정항목이나 사건의 계정 기록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때 발생한다(예를 들어, 순실현가능액이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투자유가 증권의 장부가액을 평가감하는 경우). 관련 금액의 중요성여부가 분개의 필요성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구분은 특정항목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즉, 특정항목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비율보다 낮으면 당해항목을 계정에 기록하지 않고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비율보다 높으면 해당항목을 재무제표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기록하는 등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율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 ② 계정에 기록된 항목에 대하여 재무제표에서 별도로 분리된 공시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공시 사이의 구분: 특정 항목에 대한 별도 공시 여부는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달려있다. 이러한 구분도 순이익에 대한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순이익에 대하여 특정비율보다 낮은 항목은 재무제표에 계정에 기록만하고 별도로 분리하여 공시하지 않고, 순이익에 대하여 일정비율보다 높은 항목은 계정에

기록하는 한편 재무제표에서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러한 구분은 위의 구분 ①보다 클 것으로 가정되지만 이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 ③ 재무제표에서 항목이나 주석으로서 별도로 분리된 공시와 재무제표에 특별항목으로 공시하는 것의 구분: 이러한 구분은 위의 구분 ②보다 클 것으로 가정되지만 이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회계담당자가 부적절한 중요성 분기점을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Iskander와 Iselin (1996)에 의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에 직면한다.

- ① 중요성에 대한 분기점이 너무 높으면,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생략되거나 공시되지 않으므로 정보이용자는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여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다.
- ② 중요성에 대한 분기점이 너무 낮으면, 정보이용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되므로 정보부하로 인하여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하여 손실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정 항목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성판단에 가장 중요한 변수이지만, 적절한 분기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공시항목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한 분기점이 없으므로 항목과 내용에 따라 다른 다양한 분기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기점의 필요성을 제기시키는 변수중의 하나는 산업변수이다.

## 6. 중요성 분기점에 대한 계량적 방법

감사기준에서는 감사인이 중요성을 계량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은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질적(비계량적) 요소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으로 중요성 판단을 계량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SAS 제47호는 계량적으로 중요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AS 제47호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할 때 중요성 수준에 대한 예비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예비적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극히 제한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은 계량적 기

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요성에 대한 예비적 판단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실무 및 학계에서 다음과 같은 계량적접근법을 제안하였다.

- 간편법(rule of thumb)
- 평균(또는 혼합)법
- 변동(variable)(또는 규모의) 원칙
- 공식법

아래에서 위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다.

간편법: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성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량적 지침을 고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광범위한 지침이 유용하기에는 인간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되는 질적 요소가 너무 많다. 회계원칙제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규정한 중요성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계담당자들은 실무경험과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간편법(rule-of-thumb)이라 한다. 회계기준제정기관이 중요성 지침을 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중요성 지표는 중요성의 결정기준으로서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 계속적 영업으로부터의 세전이익의 비율
- 특별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경상이익의 비율
- 세전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비율
- 과거 몇 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의 비율
- 매출총이익의 비율
- 총자산의 비율
- 총수익의 비율
- 주주지분의 비율
- 위에 나열한 비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균한 비율
- KPMG의 감사계수와 같은 기업실체의 규모에 따라 변동하는 신축(伸縮)법

위의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중요성에 대한 측정치가 유의하게 다를 수 있다.

간편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세전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전이익의 5%

- 세전이익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주식분산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세전이익의 5-10%
- 총수익의 1%
- 비영리조직에서는 정상적인 총수익의 0.5%

McKee와 Eilifsen(2000)에 의하면 중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간편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세전 이익의 5%
- 총 자산의 0.5%
- 주주지분의 1%
- 총 수익의 0.5%

감사인은 질적요소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위의 간편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간편법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자들에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비일관성 때문에 중요성에 대한 기준이 유용하다.

호주회계기준 제6호(1986)에서의 중요성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적절한 기준금액의 10% 이상의 금액은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한 중요하다.
- ② 적절한 기준금액의 5% 이하의 금액은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한 중요하지 않다.
- ③ 적절한 기준금액의 5%와 10% 사이에 있는 금액의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손익계산서 항목과 관련된 기준금액은 법인세차감후 금액을 말한다. 5~10% 범위 사이의 금액에 대하여는 중요성에 관한 지침이 없으므로 이 두 경계 사이에 “회색”(gray) 영역이 존재한다. 이 회색영역 내에서는 감사인은 전문적 판단을 하여 중요성을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위의 지침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는 임의적이라 하더라도, 이 지침을 수용한다면 중요성을 결정할 때 광범위하게 다양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Iskander와 Iselin(1996)에 의하면 실무에서 회계담당자들과 감사인들이 5%~10%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평균(또는 혼합)법은 전형적으로 4개 혹은 5개의 개별 간편법을 평균하거나 각 간편법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중요성 수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McKee와 Eilifsen(2000)이 지적한 4개의 간편법 각각에 25% 가중치를 주어 평균한다. 이와 같은 평균

화 과정을 질적 요소를 간접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변동(혹은 규모의) 원칙은 간편법과 유사하지만 기업규모에 따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중요성 수준을 달리 결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 매출총이익이 1억원보다 작은 경우 매출총이익의 2~5%
- 매출총이익이 1억원과 10억원 사이인 경우 매출총이익의 1~2%
- 매출총이익이 10억원과 50억원 사이인 경우 매출총이익의 0.5~1%
- 매출총이익이 50억원 보다 큰 경우 매출총이익의 0.5%

공식법 중에서 널리 알려진 공식은 다음과 같은 KPMG의 1998년도 판 중요성 공식이다.

$$\text{중요성} = \text{보관율(예: 1.84)} \times (\text{총자산과 매출액 중 큰 금액}) \frac{2}{3}$$

### III. 중요성과 관련된 기준의 비교

#### 1. 우리나라의 감사기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감사위험과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감사위험의 평가는 사전에 설정한 중요성의 기준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나라 「회계감사준칙」은 명시하고 있다. 중요성기준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설정하는데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중요성 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감사인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적발위험의 목표 수준을 적절히 설정한다. 「회계감사준칙」에 의하면 감사위험 중 고유위험은 내부통제구조가 없다고 가정할 때 계정과목의 성격 등에 기인하여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계정잔액과 거래에 부정 또는 오류가 내재될 위험을 말한다. 한편, 통제위험은 회사가 운용하는 내부통제구조에 의하여 계정잔액과 거래에 내재될 부정 또는 오류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발생된 부정 또는 오류를 적시에 발견하여 수정하지 못할 위험으로서 내부통제구조의 유효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위험을 말한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그 정의에서 차이가 있지만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회계감사준칙」에 의하면 계량적 요소 및 질적 요소 고려하여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계량적 요소와 질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적요소로서는 예외사항의 개별적, 총체적 영향 및 추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포함한다.

- ① 예외사항 금액의 절대적인 크기
- ② 총매출액,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에 미치는 정도
- ③ 총자산, 총부채, 순운전자본, 자기자본 및 자본금에 미치는 정도
- ④ 해당 계정과목 총액에 대한 정도
- ⑤ 해당 대분류과목 총액에 대한 비율
- ⑥ 수익성과 안정성의 추세에 미치는 영향

질적요소는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 ① 형식보다 실질의 존중
- ② 예외사항이 재무제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
- ③ 예외사항과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의 관계
- ④ 자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⑤ 계약조건의 잠재적 위약가능성,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손익의 조작, 거래의 적법성 여부 기타 의도적인 왜곡표시 등 예외사항의 민감성
- ⑥ 자산의 가치평가 혹은 현금회수가능성, 판단상의 오류가능성, 계속기업으로서 존재가능성 등 불확실성 정도
- ⑦ 예외사항의 금액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⑧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은 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예외사항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

## 2. 미국기준: FASB 개념보고서 제2호

FASB의 개념보고서 제2호(1980)에 따르면 재무보고에서의 특정항목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는 주변 상황의 관점에서 항목의 크기가 커서 그 보고에 의존하는 합리적인 사람의 판단이 변하거나 항목의 포함 또는 수정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면 중요하다.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계량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특정 항목이 정보이용자가 영향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큰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대개 해당 항목의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일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작은 항목도,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녀야 하는 주요 질적 특성으로 목적적합성(relevance)과 신뢰성(reliability)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중요성은 목적적합성이나 신뢰성과 동일한 종류의 특성은 아니다. 목적적합성과 중요성의 두 질적특성은 모두가 투자자나 기타 의사결정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떤 차이를 야기시키는지의 관점에서 정의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할 수 있다. 특정 정보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원인이 투자자들이 그러한 종류의 정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면 그 정보는 목적적합하지 않고, 관련 금액이 차이를 야기시키기에 너무 작다면 그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단되어야 하는 상황과 항목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 자체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중요성 판단을 위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이 그 성격과 부대상황을 고려해볼 때 중요한 항목과 중요하지 않은 항목을 분리시킬 분기점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큰가를 판단하여 중요성을 결정한다.

고용기관과 협상하는 고용 지원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는 중요성 개념과 목적적합성 및 신뢰성의 관계를 보여준다. 고용기관은 지원자에 적합한 직무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모든 정보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 지원자는 직무의 특성, 작업현장의 위치, 급여, 작업시간 및 후생복지에 대한 정보를 원할 것이다. 휴가와 직업안정성에 대한 정보는 취업을 수락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자는 사무실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지 여부 또는 구내식당 음식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을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면 직무 평가와 관련이 있으나 일부는 취업의 수락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이런 항목들에 부여하는 가치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예는 신뢰성을 위하여 중요성의 분기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1백만원 미만을 사소오입한 급여 정보는 연봉 8백만원의 직위를 원하는 지원자에게는 수용가능하지 않

을 수 있지만, 연봉 1억원을 지급하는 직무의 지원자 입장에서는 거의 확실히 수용가능할 것이다. 피고용인의 연금기여율에서의 1%포인트의 오류는 지원자가 후생복리에 대한 정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원자의 승진을 막는 직원의 퇴직일에 대하여 1년의 오류는 매우 중요하다. 의무적 퇴직일에 대하여 1년의 오류는 20세의 지원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63세의 지원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듯이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항목(예: 자산 또는 부채 항목, 거래, 오류 등)이 중대해질수록, 중요성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될 선별기준(screen)은 더욱 정교하여야 한다.

- ① 기업이 재무 상황과 관련된 계약을 위반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회계변경을 하면 그 기업의 재무상태가 보다 견고하여지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준의 중요성 분기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② 비반복적인 수익을 별도로 분리공시하지 않는다면 당해수익으로 인하여 손실이 이익으로 전환되거나 이익 추세가 하향에서 상향으로 반전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수준의 중요성 분기점을 적용하여 비반복적인 수익을 별도로 분리 공시하지 않은 오류를 중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③ 금액상 중요하지 않지만 기계와 비품의 두 가지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을 잘못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분류로 인하여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의 범주간의 분류를 변화시키면 중요하다.
- ④ 정상적 상황에서 공시나 수정을 정당화하기에는 작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이거나 비경상적인 거래 또는 사건에서 발생한 금액이면 중요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판단 대상항목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상대적 크기에 의거하여 중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통상적인 현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손상각손실이나 도난 손실이 소기업에서는 기업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평가 오류로 인해 순이익의 50%가 감소하는 소기업에게는 재고평가 오류가 중요할 수 있지만, 순이익에 인식할 만한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기업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판단항목을 예측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정확도가 중요성 판단에서의 또 다른 요인이다. 추정액에 대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정확도가 감소함에 따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추정액과 실현액과의 차이의 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입채무는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부채보다 대개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으므로 추정액과 실현액의 차이가 매입채무의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우발채무의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제표 작성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의존할 수 있는 계량적 중요성 지침 또는 기준을 규제기관이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FASB 토론회(1975)에 대한 답변에 근거하면 소수의 견해이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중요성 판단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회계원칙제정기관이 중요성 기준을 제정한다는 것은 다수의 일반화된 판단이 특정 개인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며, 다수의 집단적 판단이 개인의 판단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예를 들면, 전체 수익의 1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문을 별도 공시대상부문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 최소한의 크기가 회계기준에 명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이 전체 수익의 10% 미만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문의 인식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계량적 중요성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소금액만 구체화하므로 적어도 한쪽 방향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킬 여지가 있다. 회계원칙기준서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중요성을 평가하거나 최소한의 계량적 기준이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하다.

### 3. 미국기준: 증권관리위원회의 Staff Accounting Bulletin 제 99 호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관리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익 관리 방법 중의 하나는 채무제표의 작성과정과 감사과정에서 중요성의 개념을 오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는 왜곡표시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중요성기준으로 Staff Accounting Bulletin(이하 SAB) 제 99 호(1999)를 공표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채무제표작성자와 감사인을 특정항목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기 전에 해당항목이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SAB 제 99 호의 전문을 부록 B에 수록한다.

SAB 제 99 호의 목적은 채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에게 중요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중요성 평가 기준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은 새로운 중요성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 및 회계 문헌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던 개념을 공고히 하고 재무제표의 작성 및 감사 과정에서 중요성 분기점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의 복잡한 재무보고 환경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SAB 제 99호는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에게 재무보고와 감사 과정에서 왜곡표시에 대한 중요성 평가 지침을 제공한다. 감사인이 SAB 제 99호의 지침을 따르는 한편, 공격적인 재무보고를 통해 수익예상액을 달성하려는 경영진의 동기에 대한 회의를 가지면, 감사인은 부정의 징후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입수할 수 있다.

SAB 제 99호는 회계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한다.

- ① 중요성 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는 재무제표의 잠재적 변경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 ②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고의로 왜곡표시한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가?

SAB 제 99호의 가장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①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은 계량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특정 항목의 중요성을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특정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당해 항목의 중요성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 ③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고의적인 왜곡표시는 불법일 수 있다.

재무보고의 궁극적 목적은 현재 및 미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활동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가치에 공고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주식발행회사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왜곡표시했다고 증명하여야 한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같이 보이지만, 중요성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중요성을 정의하는 시도로 증권관리위원회는 중요성을 계량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중요성과 질적요소에 따라 판단되는 중요성으로 분류한다. 저자는 이를 계량적 중요성과 질적 중요성이라 부른다.

**계량적 중요성:** 계량적 중요성은 특정 사실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주가에 영향을 미

치느냐에 달려있다. 특정 사실의 영향이 자산, 이익 또는 부채의 일정금액이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중요성 분기점을 벗어나 그러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성 분기점에 미치지 못하면 공시할 필요가 없다. 회계담당자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공시하는 반면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배제시키는 간편법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1%와 10% 사이의 특정비율을 사용함으로써, 회계담당자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도 구체적인 수리적 절차를 적용하여 중요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계량적 중요성을 사용하는 논리는 합리적인 주주는 상대적으로 작은 거래의 세부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가정에 토대하고 있다. 계량적 중요성으로 정보 생산비용과 정보 부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은 경영 및 영업 전략의 너무 많은 부분이 경쟁자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도 없다.

**질적 중요성:** 관련된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항목의 성격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관계없이 항목의 크기 그 자체만으로는 중요성 판단의 충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량적으로 작은 왜곡표시라 하더라도 중요할 수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왜곡표시를 중대한 왜곡표시라 부른다.

-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부터 발생한 왜곡표시
- 이익변동이나 기타 추세 변동을 감추는 왜곡표시
- 분석가의 일치된 예상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를 숨기는 왜곡표시
- 손실(이익)을 이익(손실)로 전환시키는 왜곡표시
- 회사전체의 영업활동이나 수익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 부문과 관계 있는 왜곡표시
- 규제 조건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 차입 계약이나 다른 계약 조건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 보너스나 인센티브 조건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 비합법적인 거래의 은폐와 관련된 왜곡표시
- 고의적인 왜곡표시

위의 경우는 왜곡표시의 중요성을 평가할 때 경영자와 감사인이 고려하여야 하는 질적 요소의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계량적으로 작은 왜곡표시가 중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작은 금액을 왜곡표시하여 분석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은폐시킬 수도 있고 혹은 손실을 이익으로 전

화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질적 요소로 인하여 작은 금액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작은 왜곡표시도 특정 상황하에서는 중요하므로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보다 널리 퍼진 남용 중의 하나는 이익을 인위적으로 유연화하고 이익의 안정성에 대하여 그릇되게 인식시키기 위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은 오류를 고의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 1) 중요성 결정을 위해 비율 분기점의 사용

중요성을 평가하는 일차적인 단계에서는 계량적 분기점을 사용할 수 있다. 작은 금액의 왜곡표시를 수정하는 경우 비용-효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재무제표 작성자나 감사인은 경영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초래되는 대수롭지 않은 왜곡표시에 대하여는 장부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기업은 특정정보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익의 5% 이상이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Barlas(1999)에 의하면 감사 실무에서는 경영자에 의한 자기거래(공급의 사적이용)나 횡령 등이 없는 경우 5% 분기점에 미달하는 왜곡표시나 누락은 일반적으로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SAB 제99호에서는 중요성 결정을 위해 5% 분기점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리고 5%와 5.1% 사이의 중요성에 관한 차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증권관리위원회의 판단은 5%와 같은 구체적인 분기점을 제시하지 않는다. 모든 관련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중요성 지침은 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증권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리고 증권관리위원회는 명확한 중요성 분기점을 제시할 의도가 없으나,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대상이 중요성 분기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증권관리위원회는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은 특정항목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계량적 기준에 배타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안되며 질적요소와 계량적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오류 또는 누락의 중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중요성 분기점만을 사용하여 중요성을 결정하는 데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한다. SAB 제99호에 의하면 확인된 왜곡표시에 대하여는 질적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하므로 계량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은 계량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SAB 제99호에 의하면 합리적인 인간이 특정사건에 대해 중요하다고 여길 가

능성이 상당히 높으면 그 사건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계량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증권관리위원회는 계량적 기준이 특정 상황에서 부적당함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임원이 자금을 사외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최고경영자가 알고서도 감춘 것에 대해 최고경영자는 법적인 책임져야 한다. 사외로 이전된 자금이 총자산 장부가액의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시가 경영진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므로 자산의 사외 이전은 미래의 투자자에게 중요하다. 이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는 중요성 분기점에 관계없이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왜곡표시의 크기를 비율로 계량화하는 것은 단지 중요성 분석의 시작에 불과하며 모든 관련 고려사항을 완전히 분석하는 대안으로 사용될 수 없다. 중요성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관점에서 특정 항목의 중대성과 관련된다. 즉, 합리적인 인간이 특정항목을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 그 항목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누락시키는 결정은 그 항목이 만약 누락된다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 그 결정을 바꿀 것인지의 여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하면 회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한 항목을 누락시키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 회사는 계량적 요소 및 질적 요소의 전체와 관련시켜 재무제표의 각 항목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내의 특정 사업부문과 관련한 매출과 영업이익의 왜곡표시는 만약 그 부문이 기업 전체의 미래 수익성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 2) 중요하지 않지만 고의적인 왜곡표시

미국의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장부, 기록, 계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는 한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준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왜곡표시는 비합법적인 재무보고가 될 수 있다. SAB 제 99호는 이러한 왜곡표시나 누락이 장부와 기록에 관련된 규정을 충족하지만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유지되어 있는지를 결정짓는데 고려할 요소를 나열하고 있다.

중요성과 관계없이 고의적 오류는 수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왜곡표시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왜곡표시를 중대한 왜곡표시라 부른다. 증권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부, 기록 또는 계정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오류를 범하거나 오류를 범하도록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기록을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자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익을 조작할 목적으로 왜곡표시된 것은 중요성에 관계없이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익조작 목적으로 경영자가 지시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왜곡표시(중요성이 없다 하더라도)를 기록하거나 경영자에게 알려진 왜곡표시를 수정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경영자는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확인된 불법행위를 경영자에 주지시키고 때로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중요성을 남용하는 회사는 중요성 분기점이내에서 고의적으로 오류를 기록하고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작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와 같은 오류를 기록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익을 조작하려는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는 받아들일 수 있다. SAB 제99호에 의하면 회계시스템의 운영에서 발생하거나 영업의 정상적 과정에서 반복적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대하지 않은 왜곡표시로 인하여 장부가 합리적 상세성의 관점에서 부정확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SAB 제99호에 따르면 사무원의 오류와 같이 회계 결산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왜곡표시나 분실된 매입채무 청구서에 대한 조정은 오류가 감사절차에서 확인되거나 경영자에 알려지더라도 항상 수정할 필요는 없다.

3)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항목의 중요성을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수익이 중요하게 과대계상 되었을 때, 동액만큼 비용이 과대 계상되어 수익의 과대계상액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상계된다 하더라도 전체 재무제표는 중요하게 오도된다.

#### 4) 왜곡표시의 총계와 순액

SAB 제99호에 의하면 왜곡표시의 상계에 관련하여, 각 왜곡표시의 중요성은 개별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왜곡표시의 총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왜곡표시를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와 상계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각 왜곡표시는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수정의 필요성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른 왜곡표시와 합산된 총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요한 왜곡표시를 조정되지 않은 다른 왜곡표시와 상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 5) SAB 제99호에 대한 평가

SAB 제99호를 재무보고서의 작성과정이나 감사과정 중에 발견된 왜곡표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만, 감사인이 감사를 계획할 때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질적 측면의 중요성을 옹호하는 자들은 질적요소를 고려하는 기준이 투자자가 이용가능한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공시의 목표가 보다 잘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계량적 중요성은 모든 관련조건을 완전히 분석하는데에 부적절하다고 인식한다. SAB 제99호는 공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성 측정에 수용할 만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가 불법일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SAB 제99호가 계량적인 분기점만을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여 중요성기준을 명확히 하려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 작성자를 위한 중요성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답변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제기시켰다. 한걸음 더 나아가, 중요하지 않은 부정을 고안함으로써 중요성의 정의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SAB 제99호에 의하면 개개의 왜곡표시 또는 누락이 각 항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모든 왜곡표시와 누락이 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와도 관계됨을 지적한다. SAB 제99호는 계량적 기준의 사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하여 우려하는 것이다. 계량적 접근법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중요성의 왜곡된 해석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중대한 왜곡표시는 투자자에게 중요하여 공시되어야 하는 유형을 보여준다. 이는 측정의 정확성, 이익, 계약 불이행 또는 규제 요구사항, 경영자보상 등을 다룬다.

중요성 분기점은 판단문제이므로 증권관리위원회는 분명한 선을 긋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러나 증권관리위원회는 중요성의 분기점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즉, 기업이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중

권관리위원회는 분명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업은 제정된 계량적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기업은 적어도 증권관리위원회가 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 4. 국제감사기준

국제감사기준 제25호에서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정보의 누락(omission)이나 왜곡표시(misstatement)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중요성은 이러한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표시가 있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된 해당항목의 크기나 오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중요성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주요한 질적특성이라기보다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경계선(threshold)이나 구분점(cut-off point)을 제공한다.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경우나 왜곡표시의 영향을 평가하는 경우에 감사인은 중요성을 고려해야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고려할 뿐만아니라 개별 계정잔액, 거래유형 및 공시사항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고려한다. 중요성은 법률과 규제조건에 대한 고려와 재무제표의 개별 계정잔액 및 계정잔액간의 상호관련에의 고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특성에 따라 중요성의 수준이 다를 수도 있다.

감사인은 왜곡표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왜곡표시의 누적액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며, 월말 결산절차에서 발생된 오류가 매월 반복되면 이러한 오류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의 징후가 될 수 있다.

국제감사기준 제25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로 인식한다.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인은 계량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용가능한 중요성 수준(acceptable materiality level)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왜곡표시의 금액(계량적 특성)과 성격(질적특성) 모두를 고려해야한다. 질적 왜곡표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회계정책을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게 기술함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오

도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불충분 또는 부적절한 기재

- ②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규제를 받아 회사의 영업능력이 중요하게 훼손되는 경우 이러한 법규위배에 대한 공시의 누락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표시되었는가를 평가할 때 감사인은 감사에서 발견된 미수정 왜곡표시(unadjusted misstatement)의 총계가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발견한 미수정 왜곡표시의 총액이 중요성 수준에 근접할 경우, 이와 함께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까지 고려하면 중요성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미수정 왜곡표시의 총계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전기감사시 파악된 미수정 왜곡표시의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감사인이 발견한 구체적 왜곡표시
- ②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기타 왜곡표시(예: 추정오류 등)에 대하여 감사인의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

## 5.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의 비교

국제감사기준(ISA 제25호)와 미국감사기준(SAS 제47호)은 감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성의 사용을 다루고 있다. 감사 위험과 중요성과 관련하여 국제 기준과 미국 기준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 1) 유사점

국제 감사기준과 미국감사기준은 모두 감사 실행에서 중요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ISA 제25호와 SAS 제47호 모두 감사 종료시점에 감사위험이 받아들일 만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한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감사인은 감사계획시에 중요성을 설정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감사계획시 및 작업 완료시점에서의 증거 평가시에 중요성을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ISA 제25호와 FASB 개념보고서 제2호는 항목의 규모(size)나 크기(magnitude)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중요성을 정의한다. 또한 국제 감사기준 및 미국 기준은 질적요소를 평가하여 중요성을 결정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국제 감사기준에 의하면 특정정보에 대한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중요성은 특정 상황하에서 판단된 항목의 크기와 오류 크기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중요성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 지녀야 할 질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분기점이나 구분점(cutoff point)을 제공한다.
- FASB의 개념보고서 제2호(1980)에서는 합리적인 사람이 주변환경과 특정정보를 고려하여 내린 의사결정의 결과가 재무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에 의해 변화되거나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의 크기로 중요성을 정의한다. 이 보고서는 정보이용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다. 즉,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특정항목의 누락이나 왜곡표시에 의해 영향받는다면 그 항목은 중요하다.

미국 감사기준에 의하면 재무제표 전체나 개별항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공정히 발표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히 중요한 오류나 부정행위(irregularities)를 재무제표가 포함하고 있을 때 재무제표는 중요하게 왜곡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SA 제25호와 SAS 제47호는 중요성을 재무제표 수준과 개별 계정과목의 잔액이나 거래분류 수준에서 다룬다. 즉, 특정항목은 재무제표 전체에서 중요하거나 혹은 개별 분류와 관련해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감사기준과 미국 기준은 개별 왜곡표시, 총합 왜곡표시, 계획된 왜곡표시 그리고 전기의 왜곡표시 등에 대한 처리가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ISA 제25호와 SAS 제47호 모두 개별 왜곡표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왜곡표시의 총계는 중요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두 기준은 이미 알려진 왜곡표시 이외에 감사인의 표본 결과로부터 투영되는 왜곡표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전기에 발생하고 당기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는 왜곡표시 총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요할만한 항목의 특성 및 금액을 고려하는 것은 감사인이 수행할 적절한 감사절차의 특성, 시기, 범위를 선택하는데와 감사결과로 획득한 증거의 충분성과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감사인에게 도움을 준다.

## 2) 차이점

중요성과 관련하여 국제 감사기준과 미국 기준상의 차이점은 국제 감사기준에서는 감사기준에서 중요성을 정의하는 한편, 미국기준에서는 FASB 개념보고서 제2호에서 중요성의 개념을 논의하고 감사기준서에서 이를 확대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ISA 제25호에는 논의되었지만 SAS 제47호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 ① 국제 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 전체, 개별 계정과목, 거래 및 공시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SAS 제47호는 공시에 대한 중요성을 명백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 ② 국제 감사기준에 의하면 계정금액 뿐만 아니라 계정과목간의 관계에 의해서도 중요성 판단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미국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요성과 관련하여 계정과목간의 연계를 언급하는 것은 감사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하고 계정과목간의 관계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 IV. 결 론

중요성은 계량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갖는다. 또한 감사증거가 축적되고 사실이 변하면서, 중요성이 예비, 기획 판단에서부터 최종, 보고 판단에 이르기까지 생성한다. 그러므로 계량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도출된 중요성 분기점에 다음과 같은 질적 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중요성여부를 판단한다.

- ① 이익 및 기타 추세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 예: 손실(이익)을 이익(손실)로 전환시키는 왜곡표시
- ② 부문별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왜곡표시.
- ③ 왜곡표시에 의해 영향받는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중대성.
  - 반복적 이익
  - 잘못된 계정분류의 영향
- ④ 왜곡표시를 둘러싼 환경의 민감성.
  - 부정과 불법행위, 계약조건의 충족, 규제조건 충족 등에 왜곡표시가 미치는 영

향

- 이해관계의 충돌 등에 왜곡표시가 미치는 영향
  - 급박한 기업 인수, 합병 또는 매각, 급박한 주식 공모
  - 감사위험
  - 주주지분 또는 유보이익의 관계 등
- ⑤ 중요성의 분기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보고조건의 존재
- ⑥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와 관련된 왜곡표시나 공시의 중대성. 다음과 같은 영향이 여기에 포함된다.
- 상장법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순이익과 주당순이익의 중대성과 비상장법인 채권자의 관점에서 자기자본 금액의 중대성
  - 지분 이전(예: 판매-구매 협약)의 경우 왜곡표시가 취득가격 계산에 미치는 영향
  - 이익예상액과 차이나는 경우 이익의 왜곡표시로 인한 영향 (예: 분석가의 예상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를 숨기는 왜곡표시)
- ⑦ 경영자의 동기에 의한 왜곡표시
- 상여금이나 성과급 조건이 충족되어 경영자의 보상액을 증가시키는 왜곡표시
  - 회계추정치를 예측하고 누적시킬 때 경영자에 의해 발생가능한 편익(bias) 패턴의 징후
  - 재무보고 과정의 약점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경영자의 지속적인 의도로 인해 촉진되는 왜곡표시
- ⑧ 개별적으로는 중요한 왜곡표시이지만 서로 다른 왜곡표시의 영향이 상쇄되는 경우.
- ⑨ 현재에는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가 여러 기간에 걸친 누적효과로 인해 미래 기간에는 중요해질 가능성
- ⑩ 기업규모가 왜곡표시에 미치는 영향. 중요한 항목을 누락 또는 왜곡표시하는 위험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 ⑪ 추가로 존재할 수 있지만 발견되지 않은 왜곡표시가 감사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 ⑫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의 영향을 기록하기 위한 근거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비용-효익의 관점에서 기업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경영자가 중요하지 않은 왜곡표시를 나타내는 금액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처럼 보일 경우, ⑦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경영자의 동기유인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 ⑬ 왜곡표시의 명확성. 예를 들면, 추정, 배분, 불확실성에서와 같이 주관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왜곡표시와 대조되어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왜곡표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추정치로서 발생한 것인지? 추정치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예측치에 내포된 부정확도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논쟁점은 다음과 같다:

-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은 중요하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목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 중요성은 정확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기대보다는 정보이용자가 의사결정을 위해 요구하는 정확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특정항목이나 오류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크기, 특성과 그것이 발생하거나 나타나게된 환경 등에 의존한다.
- 특정 항목이 계정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비교 수치 및 추세, 미래의 예상 그리고 경쟁자의 계정의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 회계담당자는 화폐가치로 계량할 수 있고 다른 회계 정보의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나 오류와 관련하여 중요성 판단의 전문가이다.
- 중요성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효익이 감소한다.
- 재무제표 작성자와 감사인은 계량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항목의 중요성을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집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항목의 중요성을 신뢰성있게 결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terpretations of 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 Section 312, Audit Risk and Materiality  
in Conduction an Audit.
- Auditing Practices Board — United Kingdom (1995). 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 220:  
Materiality and the Audit, Accountancy.
- Australian Society of Certified Accountants and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 (1986).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 AAS 6; Accounting Policies.  
Determination, Application and Disclosure.
- Elliot, R. Audit Materiality and Myth (1981). *DR Scott Memorial Lectures in Accountancy*.
- Escott et al. v. BarChris Construction Corporation et al., 283 Fed. Supp. (District Ct. S.D.  
New York, 1968).
-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1980).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Concepts  
No. 2: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 \_\_\_\_\_ (1975). Discussion Memorandum: An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Criteria for  
Determining Materiality.
-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The Interpretation of Materiality  
in Financial Reporting: Revised Members' Handbook Statement.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1991).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6: Risk  
Assessment and Internal Control.
- \_\_\_\_\_ (1987).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25: Audit Materiality.
- Iskander, Takiah M. and Errol R. Iselin (1996). Industry Type; A Factor in Materiality  
Judgements and Risk Assessments. *Managerial Accounting Journal*.
- Mautz, R. and H. Sharaf (1961). *The Philosophy of Auditing*.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 Mckee, Thomas F. and Aasmund Eilifsen (2000). Current Materiality Guidance for Auditors.  
*CPA Journal*.
- Mitchell v. Texas Gulf Sulphur Co., 446 F. 2D 90, at 99-100 (10th circuit, 1971).

- Morris, Michael H. Capitalization of Interest (1984). Materiality Judgment Divergence and Users'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 Roberts, Robin W. and Peggy D. Dwyer (1998). An Analysis of Materiality and Reasonable Assurance: Professional Mystification and Paternalism in Audit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 Thompson, James H. and Kenneth J. Fowler (1993). Quantitative Guidelines: Guidance Based on Professional Pronouncements. *CPA Journal*.
- TSC Industries Inc. v. Northway Inc., CCH Federal Securities Law Reports 95, 615 (US Supreme Court, June 1976).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1999). SEC Accounting Bulletin: No. 99 - Materiality.
- \_\_\_\_\_. Accounting Series Releas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_\_\_\_\_. Regulation S-X.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Materiality

Song Ki Kim\*

### ABSTRACT

Materiality is defined as the extent of a misstatement (including an omission or non-disclosure) of relevant and reliable financial information either individually or in the aggregate that, in the light of surrounding circumstances, makes it probable that the judgment of the users of that information would have been influenced by the misstatement when making and evaluating decisions on th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The definition has a number of implications which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the impact of the concept on users' decisions and accountants'/auditors' judgements, and the concern of the profession over a proper application of the concept. As such, the work of the auditor constantly involves materiality judgements throughout an audit. The critical issue lies in resolving how materiality should be judged.

The concept of materiality is directly linked to the decision-making requirements of financial statement users. Under current authoritative guidance, the auditor is instructed to plan the audit so as to hold the probability of an undetected material misstatement to a reasonably low level. Therefore, the materiality threshold is one aspect of materiality. It is defined as the materiality level below which an item is immaterial and above which it is material. The threshold reflects the maximum amount the judge believes the financial information could be misstated and still not affect users' decisions.

---

\*Professor of Account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teriality amounts derived using quantitative approaches professional judgment about the possible effect of qualitative factors such as the following:

- Risk of earnings manipulation (e.g., motivation to manage or smooth earnings)
- Possible effect of misstatements on trends such as profitability
- Presence of restrictive debt covenants
- Magnifying effect of misstatement on share price for a company with high price/earnings multiple
- Closeness of projected earnings to net loss status
- Accuracy and reliability of accounting system
- Imminent acquisition, merger, or sale
- Possible effect of a misstatement on segment information
- Threat of litigation or other external review of the auditors' work (e.g., monitoring by a government agency)
- Relationship to stockholder' equity or retained earnings
- Imminent public stock offering
- Risk that there may be undetected misstatements
- Detection of fraud or fraud indicators in prior period
- Assessment of the risk of misstatement due to fraud.

This paper synthesizes long-standing audit practices and addresses the application of materiality thresholds to the preparation and audit of financial statements.

Key Words: Materiality, Audit Practices, Financial Statement, Materiality Threshold